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96

발의연월일: 2021. 6. 25.

발 의 자:신동근・이수진・장경태

박상혁 • 고용진 • 위성곤

강병원 • 이상헌 • 박홍근

홍정민 · 김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 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 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1. 1세 미만: 월 50만원
- 2. 1세 이상 13세 미만: 월 15만원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세"를 각각 "13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7세"를 "13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를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u>아동수당은 7세 미</u> 지급액) ① 다음 각 호의 구분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1. 1세 미만: 월 50만원 2. 1세 이상 13세 미만: 월 15 만원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3세-----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세 -----13세-----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7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5
13 <i>x</i>
<u>10 η</u>
<u>.</u>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1 સ્રો સો ઇો
<u>1세 생일</u>
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 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
고, 1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
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게 지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